



CHUNGCHONGNAM-DO COUNCIL

2023

07

# 의정 정보

공감하는 소통의정 | 변화하는 선진의정 | 실천하는 책임의정

도민들  
행복하는 의회

## 제12대 충청남도의회 전반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

2023. 7. (월)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 ■ ■ 목 차 ■ ■ ■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1**

-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3
-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 6
-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9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11**

-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 13
-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 15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 ..... 17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19**

- 충청남도 자살예방·사회통합 방안 모색 ..... 21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27**

도·시군의회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설명회 개최 ..... 29  
제빵 봉사로 사회공헌 활동 시작 ..... 31  
시민 불편해소로 생활속 스며드는 의정활동 전개 ..... 32

**최근 제·개정 법령 ..... 3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3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4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49  
수산업법 시행규칙 ..... 51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53**

부산광역시가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 55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 62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66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 7. 14.] [대전광역시조례 제6070호, 2023. 7. 14., 제정]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자산업의 기반 조성 및 양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양자산업”이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양자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자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자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양자산업의 추진전략 및 세부실천과제에 관한 사항
3. 양자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양자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양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확대 등 인적·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양자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양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양자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자산업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
2. 양자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4.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5.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투자 활성화
6. 양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
7.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및 기업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양자산업 육성 정책 방향 및 발굴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양자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략사업추진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회의의원
2.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학과 교수
3. 양자정보통신기술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양자산업 관련 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5. 그 밖에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

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록을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자산업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단 설치)**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을 둘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은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③ 대전광역시 양자산업 발전협의회 실무단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양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 [울산광역시조례 제2735호, 2023. 6. 30., 일부개정]

**이** 조례는 북방경제협력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방경제협력 대상국가와의 연계 강화, 통일의 기반구축 및 울산광역시 미래 성장의 동력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방경제협력”이란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포함한 북방경제협력 대상국가와의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말한다.
2. “북방경제협력 대상국가”는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 국가를 말한다.
3. “국제회의”는 다수 국가의 대표들이 국제적인 문제를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여는 회의를 말한다.
4. “국제기구”는 국제적인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서 다수 국가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조직체(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북방경제협력 정책 추진)** ① 울산광역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북방경제협력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북방경제협력의 전략 및 기본방향
  2. 북방경제협력 정책 세부사업의 기획, 발굴 및 추진
  3. 북방경제협력 대상국가의 주요도시와의 교류·협력관계 조성
  4. 북방경제협력 정책에 관한 울산광역시·공공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및 지원
  5. 북방경제협력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북방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북방경제협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북방경제협력 정책 추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북방경제협력위원회)** 북방경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북방경제협력사업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에 속한 사람
3. 북방경제협력사업 관련 기업체·단체·기관에 속한 사람
4. 미래전략본부장
5. 북방경제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이상 공무원
6. 북방경제협력 관련 분야에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조 요청)** 위원장은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북방경제협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북방경제협력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국제회의 상설사무국의 유치 또는 설치) ① 시장은 북방경제협력 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북방경제협력 관련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의 상설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유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무국의 유치 및 설치 등에 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17.]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128호, 2023. 4. 17., 제정]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보급 및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점자는 일반 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연·설립한 기관·단체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보급하고,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계획)** 시장은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점자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 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 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

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 시설

② 시장은 기념일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기념행사)** 시장은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점자 관련 법인·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
2. 점자교육
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등에 대한 점자 사

용 지원

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 ① 시장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들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점역·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시장은 점역·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채식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4. 20.]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564호, 2023. 4. 20., 제정]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식생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식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채식”이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채식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
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
3. 채식환경 현황 및 분석
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

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보급

2. 채식 음식점 발굴 및 지원

3. 채식환경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채식의 날 운영)** ① 구청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  
 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의 날을 권  
 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  
 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2.]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435호, 2023. 7. 12., 제정]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의 치아상실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스케일링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란 저소득층 동구 노인을 대상으로 치주질환 예방을 위하여 스케일링 시술에 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 1회 스케일링”이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1회에 한해 후속처치 없이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3.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대상을 말한다.
  - 가.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
  -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는 사람  
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가구소득의 중위값 100%이하인 사람

**제3조(지원계획)**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지원 방안
2.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그 밖에 저소득층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

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급여 수급권자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 항목의 연 1회 스케일링 시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술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원 신청자는 시술을 받고자 할 때 시술 의뢰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술기관 선정)** ① 저소득층 노인 스케

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관내 시술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술기관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

**제8조(본인부담금 지급 등)** ①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스케일링 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액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제9조(지원제한)** 국민건강보험 항목의 연 1회 스케일링을 제외한 부분 치석제거, 치주치료의 전(前) 처치로 시행하는 전악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 잇몸치료를 지원을 제한한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시술기관 및 지원 신청자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시술기관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 협력)** 구청장은 대상자의 구강질환 예방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 운영 조례

[시행 2023. 7. 3.]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1320호, 2023. 7. 3., 제정]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기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이하 “기술고문”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구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
2.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
3.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
4. 분야별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기술고문추천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술고문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기술고문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2.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기술고문을 위촉한다.

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교통, 녹지·공원, 토목, 하천수리, 부동산, 도로·공항, 문화·관광 등 해당 분야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의 자격이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고문은 20명 이내로 한다.

**제5조(임기)** 기술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기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기술고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기술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기술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회의)** 구청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기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문실적부 비치 및 관리)**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료 등)** ① 기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회의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기술고문은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청남도 자살예방 · 사회통합 방안 모색

- 우리 도는 4년 연속 전국 시·도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유지하다 ‘2021년 사망원인 통계’에서 2위로 하향되었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으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
- 이를 위하여 각 연령층 별 자살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회 내 집단과 개인이 하나의 공동체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토론회 개최

### I 총 평

- 본 토론회는 지속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도의 자살예방대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자살 예방을 이루고자 준비한 토론회로,
  - 관계 공무원, 전문가, 도민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현재 정책의 문제점과 자살예방 대책의 발전 방향을 제안함.
  - 토론회 중 주요 논의된 내용으로는 급등한 청년층(20세~34세)의 자살률, 독거노인 자살예방 관리 시스템 부족, 자살 징후 청소년 지원 체계 미흡, 자살예방사업 민·관 협업 부진 등의 문제점이 나왔으며,
  - 고령층으로 집중되어있던 자살예방사업 예산의 연령별 배분, 생명지킴이 양성 활성화를 통한 위험군 조기발견 및 신속연계, 전문성을 가진 단체와의 위탁 사업 활성화 등이 과제로 도출되었음.
- ⇒ 토론회의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하고자 함.

## II 주요 토론내용

### 1 주제발표(1인)

#### ○ 강화식 협회장 (나사랑자살방지협회)

『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 운동』

-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였으나 이에 따른 누적된 피로감이 자살 위기로 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방역이 시급한 시점임.
- 자살은 1인당 4억 900만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며 자살 시도로 인한 후유증, 유족의 신체질환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은 추계 된 규모보다 더욱 클 것으로 추산됨.
- 여성가족부와 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청소년 자살률은 2017년 7.7명에서 2020년 11.1명으로 44%가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10대의 자살 및 자해 시도는 2,633명에서 4,459명으로 69%나 치솟았음.
- 이를 대비하여 충남도는 2019년부터 15개 시군에서 일대일 멘토링사업을 실시한지 5년차가 되었으나 멘토링 활동에 심리적 교육과정 이수 없이 특정단체 (의용소방대, 적십자회)가 참여하여 시작 하다보니 낮은 사업 효율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자살예방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교육, 캠페인, 홍보 활동을 통한 자살예방에 대한 필요성과 위험군에 대한 멘토링 활동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 2 지정토론(4인)

### ① 김도윤 대표 (마음두레연구소)

- 일본 npo 라이프 링크에 따르면 자살의 위기경로는 실업, 부채, 생활고, 정신질환 등으로 이 각각의 경로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
- 따라서 통합적 자살예방의 전략을 예방·위기개입·사후관리 총 3단계로 세위 자살예방 필터의 기능을 강화해야함.
- 또한 위험수준에 따른 분류를 통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인식개선 사업,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고, 독거노인 등과 같은 잠재적 위험군에 대하여서는 선택적 예방사업을 실시하며, 자살 시도자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집중적 예방사업을 실시해야 함.

### ② 김의영 교수 (백석전문대학교)

-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명사랑 병의원·약국, 실천가게·숙박업소, 편의점 지정·관리와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위한 ‘우리동네 생명지킴이’ 역할 수행이 매우 중요함.
- ‘생명사랑 실천 사업’을 통해 자살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명사랑 병의원·약국 운영과 함께 1차 의료기관과 약국에 방문하는 자살 위기자를 조기에 발굴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에 따른 자살증상자 발굴 필요.
- 자살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살예방의 효과성이 입증된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로 적극적인 자살수단의 관리 및 접근성 제한이 필요함.

### ③ 민난희 센터장 (호수심리상담센터)

- 자살 후유증 치료 전문가로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수인 존 매킨토시에 의하면, 「자살과 그 후유증」에서 “자살 유가족은 강간이나 전쟁, 그리고 범죄적 희생 같은 깊은 정신적 외상을 남기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과 공통적인 심리 증상을

겪는다”고 밝힘. 때문에 이에 견줄만한 특별한 인력과 특별한 재원이 장기적으로 뒷받침 되어야함.

- 자살의 원인에는 조직 내에서의 문제, 가정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에는 정신적 질환 및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이며, 그 실마리를 풀어보면 근본 원인은 부채, 실업, 생활고 등 경제적인 이유로 해석이 됨.
- 실제로 상담센터의 상담자를 보면 대다수의 인원이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이에 따른 자살증후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적 문제 해결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사료됨.

#### ④ 장동화 팀장 (충청남도 자살예방팀)

- 충청남도 자살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 10만 명 당 32.2명으로 총 자살자수는 679명으로, 이는 5년만에 전국 자살율 1위 불명예를 벗어난 성과임.
- 2023년 자살예방 추진사업의 목표로는 10만 명 당 자살률을 1.6명 저감시키는 것을 단기 목표로 2025년까지 자살률을 26명으로 낮춰 전국 중위권 도약이라는 중장기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음.
- 추진 개요는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조성 등 3대 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 25개의 세부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및 생명사랑문화제 개최(9. 6.), 자살예방 종사자 힐링콘서트 (11~12월 중) 등 자살예방 인식 전파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임.

#### ③ 마무리발언 (김도훈 의원)

- 도내의 자살률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젊은 세대의 자살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고령층으로 집중되어 있는 자살예방 사업들을 세대별로 적절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생명지킴이 양성 활성화를 통한 위험군 조기발견 및 신속연계를 진행하고, 이와 더불어 독거노인과 같은 고령층의 위험군에 대한 집중적 관리대책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또한 자살예방 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하여 범사회적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할 것임.

### III 토론 과제 및 도출

#### 〈과제 1〉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자살예방사업의 연령층별 사업 배분

- 교육청 연계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추진
- 청년층 신규 자살예방사업 발굴을 통한 자살률 감소 대책 수립

#### 〈과제 2〉 독거노인 등 자살 위험군 조기발견 및 신속연계 활성화

- 생명지킴이와 연계한 독거노인 자살 위험군 집중관리 대책 방안 마련
- 고위험자 대상 정서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강화

#### 〈과제 3〉 전문단체 연계 자살예방 활동 및 홍보 사업 강화

- 자살예방 멘토의 전문 심리 교육 추진
- 민간위탁사업을 통한 자살예방 전문단체의 캠페인·홍보 활동 강화

### IV 후속조치 (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 건강진흥식품과,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등





#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경기도의회

## 도·시군의회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설명회 개최

-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31개 시·군의회 공무원 70여명 참석 -
- 자치분권2.0 및 디지털 전환 시대 경기도의회 정보시스템 현황 공유 -
- “경기도형 지방의정 디지털 표준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초의회 의견수렴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7월 12일, 도·시군 의회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내 31개 시·군의회의 정보화업무 담당팀장 및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사업,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와 경기도의회 중심의 「지방의정 디지털 표준 추진방안」을 공유하였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통해 기초의회의 개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22년 9월, KLID(한국지역정보개발원)와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하고, '23년 2월 "경기도의회 중심,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 상정과 국비확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히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정포털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전하였다.

참석한 시·군의회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구축 방안을 높게 평가하며, 이를 참고하여 자신들의 업무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회 배영철 의사담당관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계속 힘쓰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시군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빵 봉사로 사회공헌 활동 시작

- 11대 의회 개원 1주년 맞아, 청년 시의원 주축으로 대한적십자사 제빵 봉사 참여 -
- 서울시의원이 직접 만든 빵을 취약 계층에 기부하며 나눔의 가치 실현 -
-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 지속 추진할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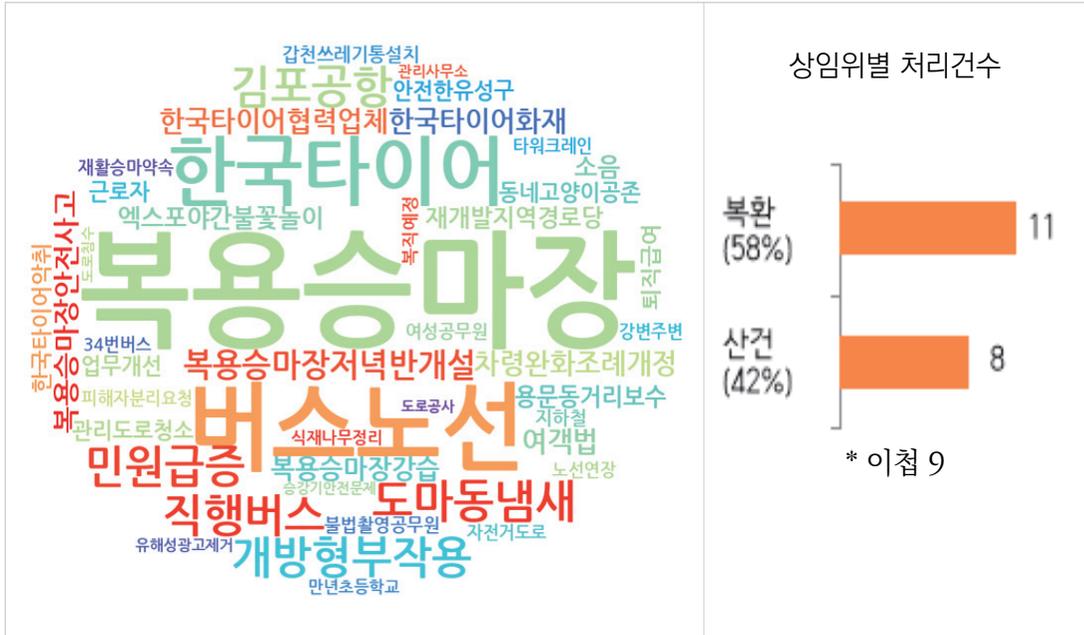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가 서울시의원과 사무처직원의 대한적십자사의 제빵 봉사 참여로 본격적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김동욱, 문성호, 송경택, 윤영희, 이상욱, 이종배, 정지웅, 채수지 의원과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원과 함께 6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제빵 봉사에 참여했다.
- 특히 이번 제빵 봉사활동은 서울시의회 11대 의회 개원 1주년을 기념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청년 시의원을 주축으로 참여가 이뤄졌으며, 서울시의원이 손수 만든 빵을 사회 취약 계층에 전달함으로써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직접 실현한 것이 의미있다.
-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을 시작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선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 김현기 서울특별시 의장은 “지역구 활동으로 분주한 서울시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사회공헌 활동에 직접 참여한 것이 뜻깊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의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시민 불편해소로 생활속 스며드는 의정활동 전개

- 2분기 민원처리 결과 발표, 1분기 대비 24% 감소 -

- 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는 2023년 2분기 시의회로 접수된 총 28건의 시민의견 및 진정민원의 처리결과를 6일 발표하고,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중점을 갖고 시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시민불편사항 접수현황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8%,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2% 등이다.
- 금년 민원사항은 1분기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시의회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 주요내용은 ▲생활민원 ▲교통불편사항 ▲도로관리 ▲체육시설 운영 관련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타이어 화재에 따른 악취 및 소음문제, 복용승마장 지속적인 강습 개설 요구, 버스노선 연장, 도로보수 및 학교주변 유해성 광고 제거 등 생활민원이 많았다.
- 대전시의회에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많음에 촘촘하고 세심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처리 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와 관련부서 등에 전달하고,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은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 이상래 의장은 "주기적 민원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의정활동시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과 감시기능 강화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해 시민이 만족하는 의정활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대전시의회는“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시민안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의 진솔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제·개정 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0. 12.] [법률 제19532호, 2023. 7. 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임직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원하면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연락금지요구권과 행사방법·절차를 알리도록 하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즉시 그에 따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등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을 정하는 한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등이 입증 책임을 지는 사항을 종전의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에서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로 확대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에 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맺는 경우 해당 특약을 무효로 하며, 방문판매·비대면 방식의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금융소비자의 주소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

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미리 해당 방문 또는 전화가 판매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성명 또는 명칭,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종류 및 내용을 밝혀야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1항제1호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통신기록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을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또는 계약체결 사실 및 기기"로 한다.

제28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3항 및 제4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제7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전속관할)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벌칙)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거짓으로 밝힌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4항까지"로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한 자
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연락한 자
3.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요건에 대한 변동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 ④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명 등을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톱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하고 스톱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함으로써 스톱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고함.

## ◇ 주요내용

### 가. 스톱킹행위 유형 추가(제2조제1호다목,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신설)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스톱킹행위로 명시함.
-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톱킹행위에 추가함.
-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톱킹행위에 추가함.

### 나. 사법경찰관의 응급조치 유형 변경(제3조제1호)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로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톱킹행위에 대한 처벌경고를 하는 경우 서면으로 하도록 함.

**다.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대상 확대(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2호·제3호 등)**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피해자 외에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서도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 등을 옮긴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변경 시 스토킹행위 상대방 또는 스토킹 행위자 등에게 통지·고지(제7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 신설)**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변경을 하는 경우 스토킹행위 상대방, 긴급응급조치 대상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고지하도록 하고, 법원이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종류의 변경 시 검사,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통지 또는 고지하도록 함.

**마. 잠정조치 미신청 또는 미청구 시 피해자 등에게 통지(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자 등의 잠정조치 신청이나 청구 요청을 받고도 이를 신청 또는 청구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바. 잠정조치 유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제9조제1항 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4항 신설)**

- 1)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2) 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 3)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사. 잠정조치기간 연장(제9조제7항)

접근금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해당하는 잠정조치기간을 종전의 기본 2개월에서 기본 3개월로 연장하고,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함.

### 아. 사법경찰관의 잠정조치 기간연장·변경 신청권 신설(제11조제2항)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의 기간 연장·종류 변경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자.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신설(제17조의2 신설)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피해자 또는 스토킹범죄 신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안전조치를 준용하도록 함.

### 차.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제17조의3 신설)

- 1)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및 스토킹범죄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2)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피해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

### 카.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17조의4 신설)

- 1)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2)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 등에 대한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3) 검사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타.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파.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1)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종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함.
- 2)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지시 불응에 대한 제재를 종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벌(벌금형과 병과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로 강화함.

〈법제처 제공〉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접근하거나"를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거, 직장"을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직접"을 "상대방등에게 직접"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주거등"을 "상대방등의 주거등"으로 하며,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제3조제1호 중 "경고"를 "서면경고"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상대방"을 "상대방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대방"을 "상대방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상대방"을 "상대방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상대방"을 각각 "상대방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결정을 한 때"를 "결정을 한 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상대방"을 "상대방등"으로, "피해자로"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피해자(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의"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상대방"을 "상대방등"으로, "피해자로"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로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 및 긴급응급조치대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스톱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제8조제3항 중 "한다"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피해자나"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피해자"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 · 제3호 및 제3호의2"로, "2개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 · 제3호 및 제3호의2"로, "2개월"을 "3개월"로 한다.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제10조제1항 중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으로, "피해자가"를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

제11조제2항 중 "법원에"를 각각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취소, 연장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스토킹행위자: 취소, 연장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3. 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제2장에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은 "피해자등 또는 스토킹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 본다.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
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변경에 관한 업무
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기간연장·변경에 관한 업무
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②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4(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잠정조치의 불이행죄)"를 "(벌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2024. 7. 12.] [법률 제19529호, 2023. 7. 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중년층"을 "청년·중년층"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상담·교육"을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방법 및 내용과 제3항"

을 "방법 및 내용,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횟수 및 결과 제출 절차와 제5항"으로, "보건복지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자살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1.] [해양수산부령 제614호, 2023. 7. 11., 일부개정]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때 사용해야 하는 어구(漁具)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구획어업의 어장관리에 사용되는 관리선으로 지정·승인받을 수 있는 동력어선의 규모를 총톤수 8톤 미만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던 것을 총톤수 25톤 미만의 범위에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획어업의 관리선으로 허용되는 동력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지역별 어장의 규모와 운영 여건 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해조틀이"를 "틀이류·손틀어구류"로 한다.

제4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허가권자는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가. 어선이나 어구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나. 허가받으려는 수면이나 주된 조업수역이 영 제2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수면인 경우

다.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경우

라.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별표 4 제목 중 "(제20조제1항 관련)"을 "(제21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의 관리선의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25톤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총톤수의 동력어선

별표 11 제1호라목2) 및 같은 호 마목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해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근해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다.

2)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은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잠수기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어선인 경우에는 해당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조업할 수 있다.

별표 15 제1호 중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을 "법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3조에 따른 수면"으로 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부산광역시가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가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의견23-0156, 2023. 6. 9., 부산광역시]

## 【의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같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부산시조례”라 한다)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제1호),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제2조제4호),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각주: 현행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는 ‘위탁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미상 ‘위탁기간’으로 보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제5호).

그리고 부산시조례 제5조의2제2항에서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으로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제1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에 관한 사항(제2호),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부산시조례 제5조의2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법령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21. 12. 13. 의견제시 21-0381 참조).

살피건대, 부산시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례 제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산시조례에 따른 재계약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의 갱신”과 같은 의미로 보이고 같은 규칙에 따라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해당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상 다른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계약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의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6. (생략)

제5조의2(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외의 방법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
4. 제13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 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평가기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표창을 청주시장 외에 추가적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두는 구청장도 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표창”을 청주시장 외에 추가적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두는 구청장도 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3-0078, 2023. 6. 2., 충청북도 청주시]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추13 판결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1조에 따르면 하부행정기관의 장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서의 구’가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둘 수 있는 시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시장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처리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1. 2. 24. 회신 11-0018 해석례 참조). 살피건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표창의 취지는 인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성실성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것이라는 점,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표창을 행할 때 적용되는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지 표창권자 자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 점,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에는 청주시장이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청주시의 하부행정기관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점(「지방자치법」 제132조제1항),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는 점(「지방자치법」 제133조),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외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창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도 없는 점, 또한 표창권한의 위임의 적절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비록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해당 표창권한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의 법리상 해당 자치구가 아닌 구 소속 공무원에게 행사하는 표창권한은 더 이상 청주시장의 권한이 아닌 구청장의 권한이 되어 청주시장 외에 추가적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도 표창권한을 부여하려는 당초 의도와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질의 요지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표창을 청주시장 외에 추가적으로 구청장이 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표창을 청주시장 외에 추가적으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두는 구청장도 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06조(지방자치단체의 장) 특별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에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에 특별자치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도지사를 두고, 시에 시장, 군에 군수, 자치구에 구청장을 둔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제132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읍장·면장·동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33조(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은 시장, 읍장·면장은 시장이나 군수, 동장은 시장(구가 없는 시의 시장을 말한다)이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등 관련

### 질의요지

- 가. 경산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경산시장이 평생교육지도자와 경산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23-0042, 2023. 5. 1., 경상북도 경산시]

## 【의견】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산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 사무”란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므로 국가사무 또는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각주: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참조).

「민법」 제31조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 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시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소정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평생교육지도자”로 하고, 평생교육지도자가 지역의 평생학습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경산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이하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면서, 질의요지와 같이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민법」 제32조 및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평생교육”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해당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라 할 것이며(각주: 법제처 2018. 9. 5. 회신 18-0311 해석례 참조), 비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권한이 교육감에게 위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사무가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사무나 국가사무가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이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 그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한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지도자와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무가 경산시의 사무여야 할 것이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에서는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역의 평생학습 발전과 체계적인 확산을 위하여 평생교육지도자와 평생교육지도자협회의 육성을 지원하는 사무는 경산시의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려면 개별적인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평생교육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평생교육지도자와 평생교육지도자협회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이 「평생교육법」 제16조제2항의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같은 항의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평생교육지도자와 평생교육지도자협회의 육성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서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보조금의 지출 대상,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추176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경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지도자와 평생교육지도자협회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한 후 해당 사업이 「평생교육법」 제16조제2항의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평생교육법」 제1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조례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여 규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평생교육지도자와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회  
 육성을 위한 사업이 「평생교육법」 제16조제2항의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의 규정, 관련 판결례 등을 참고하고, 경산시의 재정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귀 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례 반영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및 관련 법령】

####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제28조(교육부) ①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생략)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교육부 소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교육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2. ~ 20. (생략)

② ~ ⑦ (생략)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③ (생략)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 3. (생략)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생략)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5.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충남도의회

### “세이공청’의 자세로 민의에 충실한 의정활동 약속”

- 제12대 의회 전반기 1주년 기자회견... ‘지방의회 우수사례 대상’ 등 성과 소개 -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결산검사위원 증원 등 도민 참여 확대 통한 열린 의정 다짐 -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전반기 1년 동안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정책·예산분석 지원 및 도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선도적인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해 경주해 왔다.

충남도의회는 3일 제12대 의회 전반기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 후 1년간의 의정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도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 ◎ 민의를 반영한 지역 현안 해결 노력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출범일인 지난해 7월 1일 제33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년간 총 8회의 회기를 124일 동안 운영했다.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승인안 등 403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의 삶의질과 직결되는 228건의 조례안을 발의 및 처리했다.

의회는 의정모니터와 지역민원상담소,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을 적극 발굴해 왔으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46명, 128건) ▲5분발언(107명, 108건) ▲건의·결의문(27건) ▲특별위원회(7개)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 ◎ 전국에서 인정받은 일 잘하는 의회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입법·정책연구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운용으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정책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모임(38개) 운영 개선 ▲정책위원회 활성화 ▲의정토론회(23회 개최) 내실화에 힘썼으며, 신규 정책지원관 14명 등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했다.

또한 「2023년 예산안 분석」, 「2022년 결산 분석」, 「2022 충청남도 재정」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재정심의 자문기구인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예산안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 예산안 심사 원칙과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

### ◎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다짐

도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도의회는 도민과 소통의 폭을 넓힌 '열린 의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의회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민제보 제도 ▲결산검사 위원의 도민참여 확대 ▲민주성 강화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제도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현장의정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권의 자율성·독립성을 높이고, 지방의회로서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는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과 예·결산분석지원제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제12대 충청도의회는 출범 후 1년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쉽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불확실한 경제전망 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우리 의회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도민의 고견을 듣고 적극 행동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 의 정 정 보

---

❖ 발행월 : 2023년 7월

❖ 발행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 연락처 : (041) 635-5124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